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의안
번호

461

제출년월일 : 98년 10월 21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97.9.11 개정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과 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숙박업 등의 설치가능지역과 시설을 정함
 - 하천과 호소의 상류로써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
 -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사업(농어촌휴양지사업, 시직영사업)

3. 근거법령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4. 예산상황 : 해당없음

5. 사업계획 : 해당없음

6.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등

- 98.10.21 의안번호 제126호로 심의

붙임 : 1.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제정안
2. 제천시의회심의의견에대한검토.

제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이하 "숙박업등"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숙박업등의 설치가능지역등) ①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등의 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및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단, 100m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운영되는 지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3.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동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수도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km이내지역의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에 한함.

4.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안에서는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②제1항 제1호, 제3호의 지역에 불구하고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시의원포함) 5인이 상을 포함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각호의 사업구역내에는 설치할 수 있다.

1. 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농어촌휴양지사업.
2. 시장이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직접 조성하는 사업.

제4조(숙박업등의 설치제한 특례) 시장은 제3조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환경, 경관, 미풍 양속 및 주민정서등을 고려하여 숙박업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 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의회 심의 의견에 대한 검토

부 결 사 유 (의회의견)	검 토 (수 정) 의 견
1.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유하거리 기준점을 100m로 한바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p><input type="checkbox"/> 환경부에서 최소한의 자정거리를 100m이상 확보하도록 시달(환경부 수정 67010-1033)</p> <p><input type="checkbox"/> 합리적인 자정거리를 설정은 오염 배출량, 유량 등 현지여건에 따라 그 거리를 달리 하므로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마을하수처리장을 시설투자 중에 있으므로 다음의 단서조항 삽입.</p> <p>“단, 100m이내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하수처리장이 설치·운영되는 지역”</p>
2.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시정조정 위원회는 그구성에 있어 전문가나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심의 기능 강화.	<p><input type="checkbox"/> 시정조정위원회 위원구성이 위원 7인이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당해사업의 전문가나 주민대표 5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수정.</p> <p>“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시의원 포함) 5인 이상을 포함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수정</p>
3.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업 시행후 당초의 허가목적과 달리 용도 변경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항 제정.	<p><input type="checkbox"/> 대상시설이나 지역만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변경 사항은 개별법에서 정할 사항임.</p>